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 2. 17 선고 2018가단55253 판결 [사해행위취소]

---

### 재판경과

대전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1나105598 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 2. 17 선고 2018가단55253 판결

###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석규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정재

담당변호사 현근영, 서정찬, 최호동, 김수현, 김형조

피고보조참가인 C

변 론 종 결 2021. 1. 21.

판 결 선 고 2021. 2. 17.

### 주 문

1. 가.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8. 18.

체결된 매매계약을 52,952,24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나. 피고는 원고에게 52,952,24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6. 8. 18. 체결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9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 유

### 1. 사실인정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제11호증 내지 제13호증, 제15호증, 제16호증, 을 제1호증, 제15호증 내지 제1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D에 대한 감정축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관계

E은 참가인의 배우자이고, 피고는 참가인의 누나이다.

나. 공정증서와 각서의 작성

1) 원고는 2014. 12. 무렵부터 2016. 무렵까지 E에게 수회에 걸쳐 원고 자신의 금원을 대여하거나

제3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E에게 다시 송금하였다.

2) 그리고 원고는 2014. 12. 5. E으로부터 차용금 4,000만 원을 2015. 2. 25.까지 변제받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갑 제16호증)를 작성·교부받았다.

3) 또한 원고는 2015. 무렵 E으로부터 각서(갑 제2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교부받았는데, 위 각서에는 'E과 참가인은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변제기 2016. 2. 24.로 정하여 차용하되, 미변제시 서산시 F 2층 소재 E 명의의 G 영업장과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에게 일체의 추가금 없이 무조건 양도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 참가인과 E의 각 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며, 참가인이 2015. 4. 14.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4) 원고는 2015. 4. 27. E으로부터 공증인 H 작성 공정증서 2015년제202호 공정증서(갑 제13호증)를 교부받았는데, 위 공증정서에는 E이 2015. 4. 27.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되 변제기는 2015. 6. 14., 지연손해금 연 25%로 기재되어 있다.

5) 원고는 2016. 3. 28. E으로부터 공증인 H 작성의 공정증서 2016년제116호(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는데, 위 공증정서에는 '참가인이 2016. 3. 28. 원고로부터 1억 원을 변제기 2018. 3. 28.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E이 참가인의 대리인으로 이를 작성하면서 E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참가인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과 참가인이 2016. 2. 26.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용도란 빈칸)가 첨부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1) 참가인이 소유하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① 2013. 7. 19.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156,000,000원), ② 2016. 7. 7. 주식회사 J의 가압류결정(청구금액 112,015,000원)이 각 등기되어 있었다.

2) 피고는 2016. 8. 18. 참가인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241,916,666원에 매수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 8.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I에 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130,047,758원을 변제하여 2016. 9. 5.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3) 이 사건 아파트의 2016. 8. 18. 기준 시가는 241,000,000원이고, 2019. 6. 10. 기준 시가는 220,000,000원이었다{참가인의 다른 채권자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가합50245)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2019. 6. 7. 기준 시가는 183,000,000원이었다}.

#### 라. 참가인의 자력

참가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시 I에 대한 채무 외에도, K조합에 32,500,000원, L에게 40,000,000원, 주식회사 J에 112,015,000원, M에게 170,000,000원, N에게 12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 2. 당사자의 주장

####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4. 12. 8.부터 2015. 3. 18.까지 E에게 수회에 걸쳐 71,100,000원을 대여하고 2015. 무렵 E와 사이에 미변제금원을 50,000,000원으로 정산하면서 이 사건 각서를 작성·교부받았다.

2) 그리고 원고는 2015. 4. 무렵부터 2016. 3. 28.까지 E에게 수회에 걸쳐 198,150,000원을 대여하고 2016. 3. 28. E와 사이에 미변제금원을 100,000,000원으로 정산하면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교부받았다.

3) 결국 참가인은 E에게 이 사건 각서와 공정증서 작성을 위임하는 방법으로 원고로부터 합계 150,0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그리고 피고가 원고에게 원상회복방법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 220,000,000에서 피고가 I에 변제한 13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90,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 나. 피고의 주장

참가인은 E에게 이 사건 각서와 공정증서 작성을 위임하지 않았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E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서와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3.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8. 8. 30.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의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을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대한 판단

#### 1) 성립에 대한 판단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것이며(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59122 판결 등 참조), 한편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다6157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정증서에 첨부된 위임장과 이 사건 각서에는 참가인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어 위 위임장과 이 사건 각서의 인영의 진정성립, 나아가 위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므로, 참가인이 E에게 이 사건 각서와 공정증서의 작성 촉탁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을 제7호증,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E 또는 O가 이 사건 각서나 공정증서를 임의로 작성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각서와 공정증서의 문언상 차용금이

총 150,000,000원으로 특정된 점, 원고와 E 사이에 수회에 걸쳐 금원이 오고갔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E의 부탁으로 제3자에게 금원을 대여한 후 E을 통하여 이를 변제받아 원고와 E 사이에 차용금을 정확히 정산할 필요가 있었던 점, 참가인이 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참가인이 원고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필요는 없는 점, 정산 및 변제의 의미로 차용증이 작성될 수 있는 점, 이 사건 각서와 공정증서의 작성 사이에 약 1년의 간격이 있고 그 사이에도 원고와 E 사이에 금전거래가 다수였던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서와 공정증서에 각 기재된 금원의 합계 150,000,000원을 참가인의 차용금으로 볼 수 있다.

## 2) E의 변제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E이 별지1 거래내역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150,000,000원을 초과한 금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가) 우선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된 2016. 3. 28. 기준 참가인의 채무는 150,000,000원이므로, E이 2016. 3. 29.부터 원고에게 송금한 금원을 변제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변제액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별지1 기재 2016. 4. 11.자 송금부터 2016. 8. 16.자 송금까지 총 25,081,000원의 변제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원고는 별지2 거래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가 E을 통하여 제3자에게 대여한 금원 전부를 참가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각서와 공정증서는 그 작성 전에 발생한 차용금을 정산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일인 2016. 3. 28. 이후에 발생한 차용금에 대하여는 참가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으므로, 2016. 1. 14.부터 같은 해 3. 28.까지 발생한 차용금에 대한 참가인의 변제obligation이 있는데 이는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시 정산되어 100,000,000원에 포함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별지2 거래내역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E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2016. 3. 28. 이전에 발생한 차용금에 대한 변제로서 총 26,201,500원(= P에 대한 4. 4.자 100,500원 + Q에 대한 4. 12.자 5,000,000원 + R에 대한 2016. 4. 7.자 2,000,500원 + S에 대한 2016. 4. 18.자 500,000원 + T에 대한 2016. 4. 12.자 3,000,000원 + U에 대한 2016. 4. 11.자 1,000,000원 + V에 대한

2016. 3. 29.자 1,000,500원 + W에 대한 2016. 4. 18.자 12,000,000원 + 2016. 7. 18.자 1,000,000원 + X에 대한 2016. 7. 18.자 500,000원)을 변제받았다고 할 것이다.

다) 즉 E이 원고에게 변제한 금원은 총 51,282,500원(= 25,081,000원 + 26,201,500원)이다.

### 3) 소결

따라서 참가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와 공정증서에 따라 변제하여야 하는 금원은 98,717,500원(= 150,000,000원 - 51,282,500원)이다.

### 나. 사해행위 및 채무자의 사해의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고, 당시 참가인은 자력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제1의 라.항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시 원고 이외에도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채무초과인 참가인이 그 소유인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다41850 판결 등 참조).

### 다. 원상회복의무

#### 1) 원상회복방법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근저당권자 I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의 변제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리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가액에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7다265815 판결 등 참조).

#### 2) 가액배상범위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9. 6. 7. 기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가 183,000,000원인 사실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1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당시 피담보채무액이 130,047,758원인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도 위 금액과 같을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52,952,242원(= 183,000,000원 - 130,047,75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관련사건인 2019가합50245 사건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위 사건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인정한 183,000,000원을 초과한 220,000,000원을 인정할 경우 피고가 사해행위소송마다 시가감정에 따른 증가액을 가액배상하여야 한다는 부당한 결론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를 183,000,000원으로 본다).

#### 라.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와 참가인의 부모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면서 참가인에게 이를 명의신탁하였는데, 그 거주 안정을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의 선의를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진혜

[별 지]

## 부동산의 표시

## 1동 건물의 표시

서산시 [ ] [ ] 동

[도로명주소] 서산시 [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5층 공동주택(아파트)

1층 549.407㎡

2층 549.407㎡

3층 549.407㎡

4층 549.407㎡

5층 549.407㎡

6층 549.407㎡

7층 549.407㎡

8층 549.407㎡

9층 549.407㎡

10층 549.407㎡

11층 549.407㎡

12층 549.407㎡

13층 454.081㎡

14층 454.081㎡

15층 325.996㎡

지1층 97.29㎡

지2층 87.503㎡

지3층 87.503㎡

##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제12층 [ ]호 철근콘크리트구조 84.9625㎡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서산시 [ ] 대 23841.6㎡

##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23841.6분의 48.8871㎡

## 별지1

## 거래내역

| 거래일자       | 지급액         | 지급 누계액       | 원고 수취계좌 | 관련 서증  | 권수 |
|------------|-------------|--------------|---------|--------|----|
| 2014-12-03 | -250,000    | -250,000     |         | 갑제12호증 | 1면 |
| 2014-12-07 | -230,000    | -480,000     |         | 갑제12호증 | 1면 |
| 2014-12-16 | -150,000    | -630,000     |         | 갑제12호증 | 1면 |
| 2014-12-22 | -260,000    | -890,000     |         | 을제13호증 | 6면 |
| 2015-01-08 | -260,360    | -1,150,360   |         | 을제13호증 | 5면 |
| 2015-01-12 | -5,230,000  | -6,380,360   |         | 갑제12호증 | 2면 |
| 2015-02-09 | -10,230,000 | -16,610,360  |         | 을제11호증 | 3면 |
| 2015-02-25 | -4,700,000  | -21,310,360  |         | 갑제12호증 | 3면 |
| 2015-03-15 | -190,000    | -21,500,360  |         | 을제11호증 | 3면 |
| 2015-03-24 | -192,500    | -21,692,860  |         | 을제13호증 | 5면 |
| 2015-04-03 | -5,000,000  | -26,692,860  |         | 갑제12호증 | 3면 |
| 2015-04-23 | -1,230,000  | -27,922,860  |         | 갑제12호증 | 3면 |
| 2015-04-28 | -300,000    | -28,222,860  |         | 을제11호증 | 3면 |
| 2015-04-29 | -50,000     | -28,272,860  |         | 을제13호증 | 5면 |
| 2015-05-20 | -16,081,500 | -44,354,360  |         | 갑제12호증 | 3면 |
| 2015-05-28 | -2,581,500  | -46,935,860  |         | 을제11호증 | 3면 |
| 2015-06-10 | -1,581,500  | -48,517,360  |         | 을제11호증 | 3면 |
| 2015-06-16 | -1,581,500  | -50,098,860  |         | 갑제12호증 | 3면 |
| 2015-06-21 | -4,081,500  | -54,180,360  |         | 갑제12호증 | 3면 |
| 2015-06-25 | -4,081,500  | -58,261,860  |         | 갑제12호증 | 4면 |
| 2015-07-06 | -4,081,500  | -62,343,360  |         | 갑제12호증 | 4면 |
| 2015-07-20 | -6,581,500  | -68,924,860  |         | 갑제12호증 | 4면 |
| 2015-08-12 | -6,581,500  | -75,506,360  |         | 갑제12호증 | 4면 |
| 2015-08-24 | -2,581,500  | -78,087,860  |         | 갑제12호증 | 4면 |
| 2015-08-29 | -1,281,500  | -79,369,360  |         | 갑제12호증 | 4면 |
| 2015-09-10 | -2,081,500  | -81,450,860  |         | 갑제12호증 | 4면 |
| 2015-09-15 | -2,402,000  | -83,852,860  |         | 갑제12호증 | 4면 |
| 2015-09-22 | -1,000,000  | -84,852,860  |         | 갑제12호증 | 5면 |
| 2015-09-24 | -2,100,000  | -86,952,860  |         | 갑제12호증 | 5면 |
| 2015-10-10 | -480,000    | -87,432,860  |         | 갑제12호증 | 5면 |
| 2015-10-15 | -1,500,000  | -88,932,860  |         | 갑제12호증 | 5면 |
| 2015-10-19 | -5,000,000  | -93,932,860  |         | 갑제12호증 | 5면 |
| 2015-10-26 | -1,200,000  | -95,132,860  |         | 갑제12호증 | 5면 |
| 2015-11-03 | -5,000,500  | -100,133,360 |         | 갑제12호증 | 5면 |
| 2015-11-16 | -1,100,000  | -101,233,360 |         | 갑제12호증 | 5면 |
| 2015-11-20 | -3,000,000  | -104,233,360 |         | 갑제12호증 | 5면 |
| 2015-11-24 | -1,900,500  | -106,133,860 |         | 갑제12호증 | 5면 |
| 2015-12-07 | -2,000,500  | -108,134,360 |         | 갑제12호증 | 5면 |
| 2015-12-09 | -2,000,000  | -110,134,360 |         | 갑제12호증 | 5면 |
| 2015-12-10 | -1,000,500  | -111,134,860 |         | 갑제12호증 | 5면 |

|            |            |              |            |
|------------|------------|--------------|------------|
| 2015-12-31 | -1,020,900 | -104,904,500 | 물제13호중 5면  |
| 2016-01-06 | -1,000,500 | -105,905,000 | 감제12호중 6면  |
| 2016-01-08 | -400,500   | -106,305,500 | 감제12호중 6면  |
| 2016-01-18 | -500,500   | -106,806,000 | 감제12호중 6면  |
| 2016-01-22 | -1,000,500 | -107,806,500 | 감제12호중 6면  |
| 2016-01-22 | -70,900    | -107,876,500 | 물제13호중 1면  |
| 2016-01-23 | -500,500   | -108,177,000 | 감제12호중 6면  |
| 2016-01-29 | -600,900   | -108,777,000 | 물제13호중 1면  |
| 2016-02-04 | -2,000,500 | -110,777,500 | 감제12호중 7면  |
| 2016-02-11 | 500,000    | -111,377,500 | 물제13호중 1면  |
| 2016-02-16 | -8,000,500 | -117,378,000 | 감제12호중 7면  |
| 2016-02-22 | -220,000   | -117,598,000 | 물제13호중 1면  |
| 2016-02-28 | -500,500   | -118,098,500 | 감제12호중 8면  |
| 2016-02-28 | -5,060,500 | -121,149,000 | 감제12호중 8면  |
| 2016-02-28 | -1,368,000 | -123,109,000 | 물제13호중 2면  |
| 2016-03-09 | -170,000   | -123,287,000 | 물제13호중 2면  |
| 2016-03-22 | -2,000,500 | -125,287,500 | 감제12호중 9면  |
| 2016-03-26 | -100,000   | -125,387,500 | 물제13호중 2면  |
| 2016-04-11 | -1,800,000 | -127,187,500 | 물제13호중 2면  |
| 2016-04-14 | 2,000,000  | -129,187,500 | 감제12호중 10면 |
| 2016-05-12 | -3,200,500 | -132,387,500 | 감제12호중 10면 |
| 2016-05-16 | -1,300,500 | -137,387,500 | 감제12호중 10면 |
| 2016-05-25 | -300,000   | -137,687,500 | 감제12호중 11면 |
| 2016-05-27 | -1,300,500 | -138,987,500 | 감제12호중 11면 |
| 2016-06-07 | -500,500   | -139,487,500 | 감제12호중 11면 |
| 2016-06-10 | -2,000,000 | -141,487,500 | 감제12호중 11면 |
| 2016-06-16 | 2,000,000  | -143,487,500 | 감제12호중 11면 |
| 2016-06-27 | -300,000   | -143,787,500 | 감제12호중 11면 |
| 2016-06-30 | -379,820   | -144,165,820 | 물제13호중 3면  |
| 2016-07-12 | -1,400,000 | -145,565,820 | 감제12호중 11면 |
| 2016-07-16 | -899,000   | -146,555,820 | 감제12호중 12면 |
| 2016-07-19 | -200,000   | -146,755,820 | 감제12호중 12면 |
| 2016-07-25 | -300,000   | -147,055,820 | 감제12호중 12면 |
| 2016-07-30 | -300,000   | -147,555,820 | 감제12호중 12면 |
| 2016-08-01 | -1,712,680 | -149,768,500 | 물제13호중 3면  |
| 2016-08-12 | -700,000   | -149,468,500 | 감제12호중 13면 |
| 2016-08-16 | -1,000,000 | -150,468,500 | 감제12호중 13면 |

별지2

거래내역

| 상대방 | 거래일       | 대여금       | 비 고       | 거래일       | 변제액       | 비 고    |
|-----|-----------|-----------|-----------|-----------|-----------|--------|
|     | 2016/1/14 | 900,000   | 갑제15호증의 2 | 2016/1/20 | 300,500   | 갑제12호증 |
|     |           |           |           | 2016/1/22 | 1,000,500 | 갑제12호증 |
|     | 2016/1/18 | 900,000   | 갑제15호증의 2 | 2016/1/22 | 1,000,500 | 갑제12호증 |
|     | 2016/1/14 | 2,700,000 | 갑제15호증의 2 | 2016/1/22 | 1,000,500 | 갑제12호증 |
|     | 2016/1/15 | 900,000   | 갑제15호증의 2 | 2016/1/27 | 3,000,500 | 갑제12호증 |
|     | 2016/1/19 | 900,000   | 갑제15호증의 2 | 2016/1/25 | 900,500   | 갑제12호증 |
|     | 2016/3/21 | 900,000   | 갑제15호증의 2 | 2016/1/25 | 100,500   | 갑제12호증 |
|     | 2016/4/18 | 1,800,000 | 갑제15호증의 2 | 2016/3/28 | 1,000,500 | 갑제12호증 |
|     | 2016/1/19 | 900,000   | 갑제15호증의 2 | 2016/2/1  | 1,000,500 | 갑제12호증 |
|     | 2016/3/28 | 900,000   | 갑제15호증의 2 | 2016/4/4  | 100,500   | 갑제12호증 |
|     |           |           |           | 2016/4/22 | 1,100,000 | 갑제12호증 |
|     | 2016/1/15 | 4,500,000 | 갑제15호증의 2 | 2016/2/5  | 5,000,500 | 갑제12호증 |
|     | 2016/2/6  | 2,000,000 | 갑제15호증의 2 | 2016/2/12 | 2,200,500 | 갑제12호증 |
|     | 2016/3/1  | 2,000,000 | 갑제15호증의 2 | 2016/2/26 | 1,100,500 | 갑제12호증 |
|     | 2016/3/17 | 1,000,000 | 갑제15호증의 2 | 2016/3/14 | 2,200,500 | 갑제12호증 |
|     | 2016/3/22 | 3,000,000 | 갑제15호증의 2 | 2016/3/24 | 1,100,500 | 갑제12호증 |
|     | 2016/3/30 | 900,000   | 갑제15호증의 2 | 2016/3/28 | 3,300,500 | 갑제12호증 |
|     | 2016/4/18 | 1,000,000 | 갑제15호증의 2 | 2016/4/9  | 1,000,500 | 갑제12호증 |
|     | 2016/6/24 | 1,800,000 | 갑제15호증의 2 | 2016/5/2  | 1,100,000 | 갑제12호증 |
|     | 2016/2/2  | 900,000   | 갑제15호증의 1 | 2016/2/5  | 1,000,500 | 갑제12호증 |
|     | 한글대여      | 3,000,000 |           | 2016/3/21 | 300,500   | 갑제12호증 |
|     |           |           |           | 2016/4/14 | 3,000,000 | 갑제12호증 |
|     | 2016/3/14 | 4,500,000 | 갑제15호증의 2 | 2016/4/12 | 5,000,000 | 갑제12호증 |
|     | 2016/4/14 | 1,800,000 | 갑제15호증의 2 | 2016/4/15 | 1,000,000 | 갑제12호증 |
|     | 2016/4/18 | 900,000   | 갑제15호증의 2 | 2016/4/28 | 2,000,000 | 갑제12호증 |
|     | 2016/5/12 | 900,000   | 갑제15호증의 2 | 2016/5/20 | 1,000,000 | 갑제12호증 |
|     | 2016/6/19 | 4,500,000 | 갑제15호증의 2 | 2016/7/20 | 500,000   | 갑제12호증 |
|     | 2016/1/15 | 1,800,000 | 갑제15호증의 2 | 2016/2/11 | 2,000,500 | 갑제12호증 |
|     | 2016/2/12 | 2,700,000 | 갑제15호증의 2 | 2016/3/14 | 3,000,500 | 갑제12호증 |
|     | 2016/2/23 | 3,600,000 | 갑제15호증의 2 | 2016/3/22 | 4,000,500 | 갑제12호증 |
|     | 2016/3/24 | 900,000   | 갑제15호증의 2 | 2016/4/7  | 2,000,500 | 갑제12호증 |
|     | 2016/3/25 | 1,800,000 | 갑제15호증의 2 |           |           |        |
|     | 2016/5/2  | 1,800,000 | 갑제15호증의 2 |           |           |        |
|     | 2016/6/22 | 900,000   | 갑제15호증의 2 |           |           |        |
|     | 2016/1/19 | 4,500,000 | 갑제15호증의 2 | 2016/2/16 | 5,000,500 | 갑제12호증 |
|     | 2016/3/2  | 2,700,000 | 갑제15호증의 2 | 2016/3/17 | 3,000,500 | 갑제12호증 |
|     | 2016/4/4  | 2,000,000 | 갑제15호증의 2 | 2016/4/25 | 2,200,000 | 갑제12호증 |
|     | 2016/9/2  | 1,900,000 | 갑제15호증의 2 |           |           |        |
|     | 2016/11/4 | 2,800,000 | 갑제15호증의 2 |           |           |        |
|     | 2016/11/7 | 1,800,000 | 갑제15호증의 2 |           |           |        |
|     | 2016/1/19 | 4,000,000 | 갑제15호증의 2 | 2016/2/16 | 3,000,500 | 갑제12호증 |
|     | 2016/1/27 | 2,700,000 | 갑제15호증의 2 | 2016/4/18 | 500,000   | 갑제12호증 |
|     | 2016/2/5  | 900,000   | 갑제15호증의 2 | 2016/2/16 | 1,000,000 | 갑제12호증 |
|     | 2016/1/21 | 1,800,000 | 갑제15호증의 2 | 2016/2/20 | 1,000,500 | 갑제12호증 |

|  |           |              |           |           |              |        |
|--|-----------|--------------|-----------|-----------|--------------|--------|
|  | 2016/1/22 | 2,700,000    | 갑제15호증의 2 | 2016/2/22 | 300,500      | 갑제12호증 |
|  | 2016/1/15 | 4,000,000    | 갑제15호증의 2 | 2016/2/23 | 4,000,500    | 갑제12호증 |
|  | 2016/2/5  | 3,600,000    | 갑제15호증의 2 | 2016/3/14 | 5,000,500    | 갑제12호증 |
|  | 2016/3/22 | 2,700,000    | 갑제15호증의 2 | 2016/4/12 | 3,000,000    | 갑제12호증 |
|  | 2016/4/18 | 2,700,000    | 갑제15호증의 2 | 2016/9/5  | 500,000      | 갑제12호증 |
|  | 2016/8/4  | 4,500,000    | 갑제15호증의 2 | 2016/3/28 | 200,000      | 갑제12호증 |
|  | 2016/2/11 | 1,800,000    | 갑제15호증의 2 | 2016/3/2  | 2,000,500    | 갑제12호증 |
|  | 2016/4/10 | 900,000      | 갑제15호증의 2 | 2016/4/25 | 1,000,000    | 갑제12호증 |
|  | 2016/2/18 | 900,000      | 갑제15호증의 2 | 2016/3/7  | 1,000,500    | 갑제12호증 |
|  | 2016/5/2  | 900,000      | 갑제15호증의 2 | 2016/5/6  | 1,000,000    | 갑제12호증 |
|  | 2016/5/10 | 1,800,000    | 갑제15호증의 2 | 2016/3/21 | 1,100,500    | 갑제12호증 |
|  | 2016/2/5  | 900,000      | 갑제15호증의 2 | 2016/3/21 | 1,000,500    | 갑제12호증 |
|  | 2016/3/7  | 900,000      | 갑제15호증의 2 | 2016/4/11 | 1,000,000    | 갑제12호증 |
|  | 2016/4/2  | 900,000      | 갑제15호증의 2 | 2016/7/8  | 1,000,000    | 갑제12호증 |
|  | 2016/5/18 | 4,500,000    | 갑제15호증의 2 |           |              |        |
|  | 2016/6/24 | 900,000      | 갑제15호증의 2 |           |              |        |
|  | 2016/7/1  | 900,000      | 갑제15호증의 2 |           |              |        |
|  | 2016/9/25 | 900,000      | 갑제15호증의 2 |           |              |        |
|  | 2016/3/14 | 900,000      | 갑제15호증의 2 | 2016/3/21 | 1,000,500    | 갑제12호증 |
|  | 2016/9/30 | 2,700,000    | 갑제15호증의 2 |           |              |        |
|  | 현금대여      | 2,000,000    |           | 2016/3/29 | 2,000,500    | 갑제12호증 |
|  |           |              |           | 2018/3/28 | 200,000      | 갑제12호증 |
|  | 2016/7/22 | 2,500,000    | 갑제15호증의 2 | 2016/3/31 | 1,000,000    | 갑제12호증 |
|  | 2016/7/26 | 4,200,000    | 갑제15호증의 2 |           |              |        |
|  | 2016/9/5  | 900,000      | 갑제15호증의 2 |           |              |        |
|  | 2016/9/7  | 900,000      | 갑제15호증의 2 |           |              |        |
|  | 2016/9/22 | 200,000      | 갑제15호증의 2 |           |              |        |
|  | 2016/9/22 | 1,500,000    | 갑제15호증의 2 |           |              |        |
|  | 2016/9/26 | 2,400,000    | 갑제15호증의 2 |           |              |        |
|  | 2016/3/22 | 900,000      | 갑제15호증의 2 | 2016/3/29 | 1,000,500    | 갑제12호증 |
|  | 현금대여      | 2,000,000    | 갑제15호증의 2 | 2016/4/4  | 2,000,500    | 갑제12호증 |
|  | 2016/2/16 | 16,000,000   | 갑제15호증의 2 | 2016/4/18 | 10,000,000   |        |
|  |           |              |           | 2016/4/18 | 1,000,000    | 갑제12호증 |
|  |           |              |           | 2016/7/18 | 1,000,000    | 갑제12호증 |
|  | 2016/4/7  | 1,800,000    | 갑제15호증의 2 | 2016/4/28 | 200,000      | 갑제12호증 |
|  | 2016/4/25 | 2,600,000    | 갑제15호증의 2 | 2016/6/24 | 3,000,000    | 갑제12호증 |
|  | 2016/5/18 | 4,000,000    | 갑제15호증의 2 | 2016/7/18 | 500,000      | 갑제12호증 |
|  | 2016/1/20 | 2,700,000    | 갑제15호증의 2 | 2016/7/18 | 500,000      | 갑제12호증 |
|  | 2016/3/21 | 880,000      | 갑제15호증의 2 |           |              |        |
|  | 2016/5/18 | 4,500,000    | 갑제15호증의 2 |           |              |        |
|  | 2016/4/12 | 7,200,000    | 갑제15호증의 2 | 2016/8/16 | 1,000,000    | 갑제12호증 |
|  | 2016/4/14 | 1,800,000    | 갑제15호증의 2 |           |              |        |
|  | 합 계       | 175,380,000원 |           | 합 계       | 114,518,000원 |        |